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4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 강선우·한정애·임호선

윤준병 · 김영호 · 서미화

김 윤·강준현·허종식

안규백ㆍ허 영ㆍ서삼석

한민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 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 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 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 서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 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한다.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및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